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8나282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정

피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백호영

변론 종결 2019. 12. 6.

판결 선고 2020. 1. 31.

제 1 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6가단29167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에게 각 17,602,5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2020. 1. 3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C, D, E에게 각 17,602,503원¹⁾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망 F는 업무외 재해로 사망하였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단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6. 5. 망 F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보험금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단체보험이라고 하여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2003다60259 판결 등 참조). 다만,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근로자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로 지정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유하되, 업무상 재해가 아닌 재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나 그 유족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데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F가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외 재해로 사망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단체보험에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인 피고로 되어 있지만, 그 보험금 수령권자는 피고가 아니라 망 F의 상속인인 원고 등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G 주식회사로부터 망 F의 업무외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는 보험사고에 기하여 지급받은 보험금 80,410,014원 중 유족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70,410,014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것으로 정당한 권리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계약 체결 무렵 피고와 망 F 사이에 업무외 사고의 경우에도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을 제4,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N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근거로 제출한 M보험 동의서 사본(을 제4호증)의 연명부, 제1심의 필적감정시 피고가 위동의서의 연명부로서 제출한 증거물 1호, 피고가 위 필적감정시 제출한 연명부의 사본이라면서 당심에서 제출한 연명부(을 제13호증)는 동일하지 않고 3개 모두 상이한 점(증거물 1호와 을 제13호증은 육안으로도 동일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② 피고는 위 동의서에 직원들이 연명할 당시 수기로 기재된 양식과 PC를 이용한 부동문자양식, 총 2개의 연명부가 존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위와 같이 하나의 동의서에 대한 각기 다른 3개의 연명부가 제출되었는바, 하나의 동의서에 3개의 연명부가 작성된 것 자체도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총 2개의 연명부가 존재한다는 피고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점, ③ 위와 같은 이례적인 사정에 더하여 을 제4호증의 M보험 동의서 사본과 위 각 연명부에 간인 등의 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위 동의서와 피고가 제출한 각 연명부를 연결문서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제1심 감정인 N의 필적감정결과 증거물 1호의 F 서명은 다른 증거물들의 서명 필적과 동일인에 의한 필적이라고 단정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소견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4, 6,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M보험 동의서의 내용에 대하여 망 F가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 C, D, E에게 그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각 17,602,503원(= 70,410,014원 × 1/4,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6. 11. 11.부터(원고는 피고가 보험금을 받은 2016. 6. 20.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보험금을 받아 피보험자나 그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피고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3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태혁, 판사 윤이나, 판사 유지현

선 정 자 명 단

1. A
2. C
3. D
4. E. 끝.

1) 항소장 항소취지 기재 '17,062,503원'은 옳기로 보인다.